

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HDC알짜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20.08.21
3. 주요 정정사항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한다.</u></p> <p>② <생 략></p>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행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u>예탁</u>)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 14.<생 략></p>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④ <생 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u>전자등록</u>)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 14.<현행과 같음></p>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p> <p>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③ <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u>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u>)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1조(<u>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u>) <삭 제></p>
<p>제12조(수익증권의 <u>재교부</u>)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2조(수익증권의 <u>재교부</u>) <삭 제></p>

<p>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삭제></p> <p>⑧<현행과 같음></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

<p>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p> <p>8. ~ 10. <생략></p> <p>② <생략></p>	<p>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p> <p>8.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생략></p> <p>②<u>투자자</u>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현행과 같음></p> <p>②<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③<생략></p> <p>④<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⑤<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⑥<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u></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p>⑤<삭제></p> <p>⑥<삭제></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u>)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 ~ ④<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 ~ ④<현행과 같음></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생략></p> <p>③<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생략></p> <p>④<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u></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생략></p> <p>④<삭제></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생략></p> <p>④<u>제51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제39조와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u></p> <p>⑤<u>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u></p> <p>1. 금액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 및 제2호의 기간일수를</p>

	<p>급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비용(관련세금 및 분담금, 법률자문료 등)</p> <p>2. 기간 : 변경시행일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⑥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③<생략></p> <p>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 ③<생략></p> <p>④제3항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 2.<생략></p>	<p>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제3항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1. ~ 2.<현행과 같음></p>
<p>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소각</p> <p>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p> <p>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생략></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 ⑨<생략></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현행과 같음></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 ⑨<현행과 같음></p>
<u><신설></u>	<u><부칙></u>
	<p>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현재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갱신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12.23%	17.9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 현재 갱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u>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u>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정기갱신	-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

<끝>.